

법학과

Department of Law

교육목표

법학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역사가 묻어있는 고전적인 학문이다. 동시에 법학은 사람과 사회와 국가의 현실적 존재방식과 상호관계를 규율하기도 하고 이들이 지향해야할 존재방식과 상호관계를 규명하기도 하는 현실 지향적 미래지향적인 가치탐구의 학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학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이성적·철학적 성찰과 탐구의 자세와 인간의 사회·국가생활에 관련된 모든 학문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대학원 법학과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연속적·통합적 운영 과정에서 법철학적·법사상사적·법사회학적 연구, 일반법과 특별법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법이론을 통한 판례분석 연구, 비교법적 연구, 세부 법영역 간 및 다른 학문 영역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독창적인 연구능력의 배양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문제 해결과 선진 법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정보산업시대·세계화시대를 주도하는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진로 및 취업분야

학문연구과정인 대학원과정은 대학원생들에게 법학적인 사고능력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 법학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후 각종

국책연구소 혹은 민간연구소에 연구자로 진출하거나 정규 대학에 교수로서 취업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대학원에서 습득하게 되는 법학적인 사고능력은 일반기업체 법무팀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에서 배우게 되는 법의 사람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규율방식의 깊이 있는 이해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이후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정치인으로 진출하는데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자신의 연구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됨으로 현재 이미 공직이나 민간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더하여진 능력에 따라,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각자의 영역에서 법학과 관련된 업적을 더 수월하게 그리고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

과정별 개설전공

■ **석사학위/석·박사통합/박사학위 과정** : 기초법 전공, 공법 전공, 민사법 전공, 형사법 전공, 상사법 전공, 국제법 전공, 사회법 전공, 과학기술법 전공, 지식재산권법 전공, 부동산법 전공,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전공, 탐정법 전공(박사), 도시개발·정비법 전공(박사, 2025-2학기부터 적용)

학과 내규(전문수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일반대학원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원 법학과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분야) 법학과에는 석사·석박사통합·박사과정 공통으로 다음 각호의 전공과정을 개설한다. (2009.2.25.개정, 2010.4.26. 개정, 2017.1 개정)

1. 기초법 전공
2. 공법 전공[헌법 트랙, 행정법 트랙]
3. 민사법 전공
4. 형사법 전공
5. 상사법 전공[상법 트랙, 국제금융법 트랙]
6. 국제법 전공
7. 사회법 전공
8. 과학기술법 전공
9. 지식재산권법 전공
10. 부동산법 전공
11.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전공
12. 탐정법 전공(2018.10.10. 개정)
13. 도시개발·정비법 전공(2024.10. 개정)

제3조(전형방법) (2013.3.1.개정) ① 입학시험은 학과장과 학과장이 추천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전임교수로 구성된 법학과 입학시험위원회에서 시행한다. ②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구술시험, 필답고사로 시행한다. 다만, 필답고사는 면제할 수 있다.

제2장 선수과목

제4조(선수과목) (2013.3.1.개정) (2015.12 개정), (2018.1 개정), (2018.9.18. 개정) (2019.2 개정)

① 현 학위과정의 이전 학위과정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내국인에게는 선수과목을 부과하지 않으며 지도교수의 지도가 있을 경우 권장 과목을 청강할 수 있

다. (2015.12 개정), (2017.1 개정)

② 단,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중 예외적으로 선수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학과장의 승인에 따라 선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학기 개시 전 교학팀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로 지정요청 하여 승인된 경우 선수과목 이수요건은 신청자의 입학년도에 당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전 내규 참조) (2013.3.1. 개정), (2015.12 개정), (2017.1 개정)

③ 단, 이전 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를 권장한다. (2015.12 개정)

1. 석사과정 외국인은 석사과정 개설과목 중 한국법의 이해 I, II 6학점 이수를 권장한다.
2. 박사과정 외국인 중
가. 석사과정 재학 시 법학과에서 개설한 한국법의 이해 I, II 6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 위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석사과정 개설과목 중 한국법의 이해 I, II 6학점 이수를 권장한다.

제3장 종합시험

제5조(응시자격)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3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3.0(B0) 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라. 단, 석사학위 논문 청구전까지 국내저명학술지(등재후보지 제외)에 논문 1편을 게재한 경우,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2. 박사학위과정
가. 학위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저명학술지(등재후보지 제외)에 논문 2편 게재로 종합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나. 단,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학생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통해 종합시험에 응시 및 합격할

수 있다.

다. 전항의 단서에 의해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4학기이상 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3.0(B0)이상이어야 한다

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6조(시험과목) ① 석·박사과정 종합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별표 참조

② 석사과정은 제1항의 시험과목 중에서 기초공통 1과목과 전공 1과목을 선택·응시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의 경우는 제1항의 시험과목 중에서 기초공통과목 1과목과 전공 2과목(주전공 2과목, 또는 주전공 1과목과 타전공 1과목)을 선택·응시한다.

제7조(응시절차) ① 종합시험 응시과목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2012.2.6. 개정) (2017.1. 개정)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026.2.5 개정)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별로 요구되는 응시과목을 학기별로 나누어 응시할 수 있다.

제8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소정의 기간 내에 시행한다. (2009.5.25. 개정) (2010.4.26. 개정) (2012.2.6. 개정) (2017.1 개정)

제9조(출제위원 선정) ① 개별 시험과목의 출제위원은 응시자의 전공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출제위원은 각 학위과정별로 1과목 출제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학과장의 승인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2018.4.18. 개정)

제10조(시험 형식과 시간) ① 시험은 논술형으로 출제한다.

② 시험시간은 과목당 80분으로 한다.

제11조(채점) 채점은 출제위원이 지정된 장소에서

행한다.

제12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3조(관련 서류 보관) 종합시험 후 문제지, 답안지 및 관련 서류는 법과대학 교학팀에서 3년간 보관한다.

제4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①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4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석사과정에 신입학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1. 본 대학원 학점 선취득제도에 의해 대학원 전공과목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2. 입학전 국내의 일반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③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선수과목이수 대상자가 수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료요건 외에 선수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나.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다. 선수과목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라.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마.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바.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026.2.5. 개정)
 사.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을 받은 자
 아.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나.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다.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라. 선수과목을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마.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바.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사.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026.2.5. 개정)
 아.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2019.9 개정)

(1) 2013년도 이전 입학생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① 단독연구 : 100 %
 ② 공동연구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 100%
 기타 2인 공동연구 - 70%
 3인 이상 공동연구 - 50%

(2) 2014년도 이후 입학생 : KCI등재지 1건 이상(게재확정 인정)

※ 단, 연구업적 기준은 입학 이후부터 논문심사학기의 기준일(매 4월 말일, 10월 말일) 까지 게재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등재후보지 제외)에 논문 게재하여 합격 인정 받은 자는 연구 논문실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있음

자.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을 받은 자
 차.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참고>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

제16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은 논문지도를 받기 위하여 전공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지도교수 1

인을 위촉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3.3.1 개정)

② 지도교수 선정은 2학기 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참고>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8조

제17조(연구계획서 제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1 개정)

제18조(초록발표) (2018.4.18. 개정) ① 논문의 초록 또는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제16조(수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초록발표의 합격여부는 학과장이 논문지도교수 및 참여 전임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2013.3.1. 개정)

제19조(학위논문 심사위원) ① 석사과정의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②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내부인사는 3인이내, 외부인사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본교 퇴임교원과 현직 비전임교원(외래강사 포함)은 내부인사로 간주한다.

③ 심사위원 위촉은 학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장이 위촉한다. (2013.3.1. 개정)

제20조(학위논문 심사) ① 석사과정의 학위논문 심사는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본심사는 3회 이상(예비심사 제외)으로 한다.

③ 박사과정은 학위논문 심사 전에 예비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예비심사는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서면심사로 진행하며,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한다. 예비심사결과 심사위원 5인 중 4인이상이 “우”이상 판정한 경우 본심사에 회부한다.

제21조(학위논문 심사합격) ①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별로 “가” 또는 “부”로 평가하며, “가”판정은 3등급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가”를 받은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4/5위원으로부터 각각 “가”판정과 “80점이상(100점만점)”판정을 받은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2013.3.1. 개정)

제22조(석사학위 논문 대체) ①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 국내저명(KCI 등재지) 2편 혹은 국제저명(SSCI(SCOPUS 포함)) 1편으로 정한다.

② 시행 시기를 2020학년도 가을 석사학위 청구 논문부터 적용한다. <참고>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5조 (2013.3.1 개정)

제5장 기타

제23조(기타) 이 내규에 없는 사항은 법과대학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012.3.1. 개정) , (2013.3.1. 개정)

부 칙(2008. 9. 신설)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는 2008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부 칙(2009. 2. 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2조 및 제8조 ③항

부 칙(2010. 4. 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2조 및 제8조 ①항

부 칙(2012. 2. 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7조 ①항 및 제8조 ②항, ③항, ④항

부 칙(2013. 3.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3조 제목, 제4조 제목 및 ②항, 제16조 ①항, 제18조 ②항, 제19조, 제21조 ②항 ③항, 제22조 ②, ③항, 제23조 ①항, ②항

부 칙(2015. 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4조, 제4조 ①항, ②항, ③항

부 칙(2017.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2조, 제4조 ①항, ②항, 제7조 ①항 1호, 2호, 제8조 ①항, 제17조

부 칙(2018.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4조

부 칙(2018. 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9조 ②항, 제18조

부 칙(2018. 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4조

부 칙(2019. 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15조 1항 ②호 아. 목

부 칙(2018. 1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2조 12호

부칙(2024. 1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 2조 13호

제3조(경과조치) 제 2조 13호는 2025년 2학기부터 선발한다.

부 칙(2019.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4조

부칙(2026.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 7조 2항, 제 15조 1호 바. 목, 2호 사. 목



■ **내국인 선수과목** : 선수과목을 부과하지 않으며 지도교수의 지도가 있을 경우 권장 과목을 청강할 수 있다.

■ **외국인의 선수과목 권장** : 이수한 선수과목들의 총 평점평균 3.0이상

1. ~2017학년도 입학자 : 석사과정 개설과목 중 한국법의이해 I, II 6학점, 학부강좌 중 헌법, 민법, 형법, 상법, 국제관계법, 과학기술법 분야 가운데 3학점 이상, 총 9학점 이상
2. 2018학년도 입학자~ : (법학과 학과내규 제4조 참조) 한국법의이해 I, II 6학점 이상
3. 위의 지정된 선수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

■ 종합시험과목표

기초공통과목	헌법총론, 민법총칙, 형법총론, 상법총칙, 행정법기본법리, 조약법, 민사소송법1, 노동법, 인터넷과 법, 부동산계약법, 스포츠법, 금융법, 법철학, 지적재산권법, 국제형사법연구, 탐정법원론
전공과목	[기초법 전공] 법사상사, 법학방법론, 법사회학, 법제사 [공법 전공] 기본권, 통치권력1(선거와 국회), 통치권력2(정부와 법원), 헌법소송,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특별행정법, 환경법 [민사법 전공] 물권법, 담보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형사법 전공]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2, 형사정책 [상사법 전공] 상행위법, 회사법1, 회사법2,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국제법 전공] 국제기구법, 국제인권법, 국제해양법, 국제경제법 [사회법 전공] 개별적 노동관계법,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과학기술법] 개인정보법제, 정보공개법제, 소비자보호법제, [지식재산권법트랙] 신지적재산권법,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국제지적재산권법 [부동산법 전공]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중개법, 부동산사법, 부동산공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전공] 엔터테인먼트법, 언론정보법, 문화국가론, 스포츠계약법 [탐정법 전공] 탐정과 사법, 탐정과 형사법, 탐정과 형사절차, 탐정윤리와 법

- ① 석사과정의 경우 석사학위 논문 청구전까지 국내저명학술지(등재후보지 제외)에 주저자로 논문 1편을 게재시,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박사과정의 경우 박사학위 청구 전까지 국내저명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 2편을 게재한 경우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학생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교수의 승인을 통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② 석사과정은 상기의 종합시험과목표 시험과목 중에서 기초공통 1과목과 전공 1과목을 선택·응시하여야 한다.
- ③ 박사과정의 경우는 상기의 종합시험과목표 시험과목 중에서 기초공통과목 1과목과 전공 2과목(주전공 2과목 또는 주전공 1과목과 타전공 1과목)을 선택·응시한다.

이 훈 중				
전 공 분 야	상사법			
세부연구분야	회사법, 자본시장법, 유가증권법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당 과 목	상법총론	회사법	유가증권법	자본시장법
대 표 저 서	이야기로 듣는 상법, 동방문화사, 2019. 디지털사업에 관한 법 이야기, 글누림, 2005.			
대 표 논 문	민사시효와 상사시효 구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59권, 2020.			
	자기주식처분과 주식평등원칙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3호, 2016.			
	채굴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법조 제68권 제2호, 2019.			

변 중 필				
전 공 분 야	형사법, 법철학			
세부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당 과 목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법철학
대 표 저 서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역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형법해석과 논증, 세창출판사, 2012 순수법학(2인 공역), 길안사, 1999/ 법적 논증이론(3인 공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대 표 논 문	형법해석과 정당화, 형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2017			
	형법해석·적용에서 규범적 평가기준의 활용과 논증의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7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강원법학 제46권, 2015			

최 봉 석				
전 공 분 야	행정법			
세부연구분야	행정법일반이론, 지방자치법, 환경법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Hannover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당 과 목	행정법(총론,각론)	지방자치법	행정구제법	환경법
대 표 저 서	「행정법총론」, 삼원사, 2018. 「지방자치법론」, 삼원사, 2018.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4.			
대 표 논 문	“지방분권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과제”, 법학논총, 2018.			
	“이행강제금의 법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입법적 과제”, 비교법연구, 2016.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미국법의 대응과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014.			

최창렬				
전공분야	민사법			
세부연구분야	재산법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담당과목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대표저서	「채권총론」(공저), 출판역사, 2020 「위약금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대표논문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토지법학 제37권 제2호, 한국토지법학회, 2021 “양해각서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질”, 민사법학 제33권 제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7 “도로소음으로 인한 환경침해의 방지청구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6			

김도현			
전공분야	기초법		
세부연구분야	법사회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당과목	법사회학		서양법제사
대표저서	법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소송과 법조		
	법과 사회		
대표논문	사회학적 법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 법관의 커리어 패턴 분석		
	민사소송의 변호사 대리율 현황과 추이		

오 미 영			
전 공 분 야	국제법		
세부연구분야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학사학위과정	神戸大学	法律学科	法学 학사
석사학위과정	神戸大学	法学研究科	法学 석사
박사학위과정	神戸大学	法学研究科	法学 박사
담 당 과 목	국제법총론		국제법각론
대 표 저 서	『국제법기본판례50』, 박영사, 2018.		
	『국제투자협정과 ISDS』, 한국학술정보, 2012		
	『國際人權法の国内的実施』, 信山社, 2011		
대 표 논 문	글로벌 보건안보와 전염병, 『비교법연구』, 2020. 8		
	국제평화와 안전의 보장과 UN의 한계와 미래: 집단 안보체제로서의 UN은 유효한가?, 『평화학연구』, 2020. 12		
	인권조약의 유보와 일본의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규제, 『법학논총』, 2014. 2.		

김경제				
전공분야	헌법, 사회법			
세부연구분야	언론·출판·방송, 헌법입증방법론, 개별적 노동관계법,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학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부산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Born 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che Fakultät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부산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독일 Born 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che Fakultät	법학박사	
담당과목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재판소법
대표논문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12권 제5호, 2021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학연구, 33호, 유럽헌법학회, 2020 헌법의 침해, 공법연구, 2011. 6., 41면 이하.			

서 계 원			
전 공 분 야	지적재산권법		
세부연구분야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생명공학과 법, 정보법, 과학기술과 법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법과대학	이학사/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공학법제
대 표 저 서	1. 『특허법 주해』(공저), 박영사, 2010 2. 『Entertainment Law』(공저), 박영사, 2007 3. 『생명공학법제』,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대 표 논 문	1. 徐啓源, “著作權 制度의 自生의 起源에 관한 研究 -中國과 우리나라의 出版文化를 中心으로-”, 『季刊 著作權』 第24卷 第2號, 韓國著作權委員會, pp.83-112, 2011. 2. 徐啓源, “公正利用 法理(fair use)의 國內法 編入에 대한 實證的 研究”, 『法學研究』 第51卷 第4號, 釜山大學 校 法學研究所, pp.159-192, 2010. 3. 徐啓源·李海燕, “中国法律关于商标与商号权之间冲突的立法现状与解决途径”(中國法에서 商標權과 商號 權의 衝突 및 解決方案), 『知識財産研究』 第4卷 第1号, 韓國知識財産研究院, pp.27-77, 2009.		

임 규 철			
전 공 분 야	과학기술법		
세부연구분야	개인정보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개인정보법		과학기술법
대 표 저 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률(번역)		
	21세기 인터넷 정책과 법		
	개인정보와 법		
대 표 논 문	판례에서 나타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내용 비밀독음에 대한 비판적 소고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대책 실행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유럽연합과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개선을 위한 소고		

이 용 중			
전 공 분 야	국제법		
세부연구분야	국제기구법/국제분쟁해결		
학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ashington	정치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정책학전공)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Leiden	법학과	법학석사(LL.M.)
박사학위과정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법학과	법학박사(Dr.iur.)
답 당 과 목	국제법	국제협상법	국제법연습
대 표 저 서	Legal Issu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Armistice System(Kluwer: 2002) China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21st century, 2013)		
대 표 논 문	The “Peace Treaty” as a U.S. Doctrinal Option and Its Application to the DPRK: A Historical and Analytic Review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51:1) Will Trump's Military Option against North Korea Work? Legal and Political Restraints (at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Vol.10: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1호)		

김재선			
전공분야	행정법		
세부연구분야	의료법, 데이터법, 과학기술행정법		
학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당과목	행정법	행정구제법	행정법각론
대표저서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산업과 법, 세창출판사, 2021 (공동) Korean Public Health Law, KLRI, 2020. (한국법제연구원)		
대표논문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2021. 'Legislative Issues in Disclosing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to Participants in Biomedical Research: Effectiveness and 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Vol. 32(12), 2017. 의료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미국 HIPAA/HITECH 연구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44권, 2016.		

홍대운			
전공분야	형사법		
세부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박사학위과정	코넬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담당과목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대표저서	책 도독질은 고상한 범죄: 중국 문명과 지적재산권법의 역사, LawBridge, 2018 (역서)		
대표논문	"미국 연방법무부 기업범죄기소원칙의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022. (대한변호사협회 2022 우수 학술논문상 수상작)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North Korean Environmental Law: Origins, Evolution, and a Comparative Analysis", Ecology Law Quarterly (Currents), Nov. 2021, UC Berkeley School of Law (SSCI-Indexed, corresponding author)		

홍선기			
전공분야	헌법		
세부연구분야	헌법, 인권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당과목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대표저서	4차산업혁명의 이해, 박영사, 2020 (공동) 최신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도서출판 수북이, 2016. 정보기본권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 한국학술정보, 2010		
대표논문	독일 스포츠 인권에 관한 연구 (스포츠법연구, 2021.05) 독일의 디지털기본권에 관한 논의 (유럽헌법연구, 2020.08)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독일의 법적대응 및 기본권 보호(헌법학연구, 2021.06)		

이 승 현			
전 공 분 야	민사법		
세부연구분야	재산법, 가족법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담당 과 목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대 표 저 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19 (공동)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20 (공동)		
	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도입 검토, 한국법학원, 2020 (공동)		
대 표 논 문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의 검토-(법학연구, 2024.03)		
	미등기 건물의 토지 사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의 검토-(저스티스, 2024.02)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나81375 판결(미간행) 및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5465 판결(미간행)의 검토-(아주법학, 2024.02)		

김 원 각			
전 공 분 야	상사법		
세부연구분야	회사법, 보험법, 유가증권법, 자본시장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Iowa	법학과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Iowa	법학과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당 과 목	상법총론	회사법	보험법, 유가증권법
대 표 논 문	주식회사 이사 선임 제안 주주에 대한 사전통지청구", 경제법연구 제24권 제1호, 2025		
	포털사이트의 알고리즘 변경이 일본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인지 여부 - 최근 티베로그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35권 제3호, 2025		
	하나의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위험변경증가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보험법연구 제19권 제1호, 2025		



교과과정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고
LAW6017	한국법의이해 I	3			석사		외국인선수
LAW6018	한국법의이해 II	3			석사		외국인선수
LAW6019	법문서작성과인용법	3			석사		공통
LAW6020	헌법일반이론	3			석사		공법전공
LAW6021	비교헌법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6022	기본권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6025	국가조직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6027	헌법재판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6028	교육헌법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6033	언론법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6034	국가안보법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6305	행정법일반이론	3			석사		공법전공
LAW6307	행정작용법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6094	행정강제론	3			석사		공법전공
LAW6095	행정절차법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6096	행정구제법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6098	지방자치법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6100	토지행정법론	3			석사		공법전공
LAW6104	행정입법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6105	국가배상법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6106	신문방송법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6107	헌법논증방법론	3			석사		공법전공
LAW6108	에너지법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6109	국제환경법연구	3			석사		공법전공
LAW8016	헌법특수연구	3			박사		공법전공
LAW8018	헌법사연구	3			박사		공법전공
LAW8021	경제헌법연구	3			박사		공법전공
LAW8022	기본권특수연구	3			박사		공법전공
LAW8024	정치기본권연구	3			박사		공법전공
LAW8026	통치기구특수연구	3			박사		공법전공
LAW8029	헌법재판특수연구	3			박사		공법전공
LAW8092	규제행정법론	3			박사		공법전공
LAW8094	행정법판례연구	3			박사		공법전공
LAW8095	지역개발행정법론	3			박사		공법전공
LAW8097	손실보상법론	3			박사		공법전공
LAW8098	공법상재판외분쟁해결절차연구	3			박사		공법전공
LAW8099	비교행정법연구	3			박사		공법전공
LAW8100	비교행정판례연구	3			박사		공법전공
LAW8102	행정쟁송법특수연구	3			박사		공법전공
LAW8105	의료관계법연구	3			박사		공법전공
LAW8106	정치관계법연구	3			박사		공법전공
LAW8312	환경법연구	3			박사		공법전공
LAW6110	국제법일반이론	3			석사		국제법전공
LAW6113	국제기구법연구	3			석사		국제법전공
LAW6114	국제인권법연구	3			석사		국제법전공
LAW6122	국제분쟁해결법연구	3			석사		국제법전공
LAW6125	국제경제법연구	3			석사		국제법전공
LAW6126	EU법연구	3			석사		국제법전공
LAW6127	WTO법연구	3			석사		국제법전공
LAW8107	국제판례연구	3			박사		국제법전공
LAW8111	국제법특수연구	3			박사		국제법전공
LAW8112	국제인도법특수연구	3			박사		국제법전공
LAW8114	국제경제법특수연구	3			박사		국제법전공
LAW6001	법학방법론	3			석사		기초법전공
LAW6011	비교법일반연구	3			석사		기초법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고
LAW6012	법사회학일반연구	3			석사		기초법전공
LAW6013	법인류학연구	3			석사		기초법전공
LAW6252	동양법제사연구	3			석사		기초법전공
LAW6256	서양법제사세미나	3			석사		기초법전공
LAW8003	법존재론연구	3			박사		기초법전공
LAW8004	법인식론연구	3			박사		기초법전공
LAW8005	논증이론	3			박사		기초법전공
LAW8012	법사회학특수연구	3			박사		기초법전공
LAW8013	법조사회학연구	3			박사		기초법전공
LAW6035	민법일반이론	3			석사		민사법전공
LAW6040	법률행위론	3			석사		민사법전공
LAW6042	계약론	3			석사		민사법전공
LAW6045	이혼법론	3			석사		민사법전공
LAW6048	물권법판례연구	3			석사		민사법전공
LAW6049	채권법판례연구	3			석사		민사법전공
LAW6054	비교민법연구	3			석사		민사법전공
LAW6055	취득시효론	3			석사		민사법전공
LAW6134	민사소송증거론	3			석사		민사법전공
LAW8032	소멸시효론	3			박사		민사법전공
LAW8035	소유권론	3			박사		민사법전공
LAW8036	용익물권론	3			박사		민사법전공
LAW8037	담보물권론	3			박사		민사법전공
LAW8039	매매계약론	3			박사		민사법전공
LAW8043	계약법판례연구	3			박사		민사법전공
LAW8044	불법행위법판례연구	3			박사		민사법전공
LAW8050	민사책임론	3			박사		민사법전공
LAW8122	민사소송법판례연구	3			박사		민사법전공
LAW8131	의료소송론	3			박사		민사법전공
LAW6199	부동산거래와법	3			석사		부동산법전공
LAW6206	부동산공법연구	3			석사		부동산법전공
LAW6197	부동산담보법연구	3			석사		부동산법전공
LAW6198	부동산임대차와법	3			석사		부동산법전공
LAW6202	부동산중개업법연구	3			석사		부동산법전공
LAW6207	부동산판례연구	3			석사		부동산법전공
LAW8190	부동산감정평가론	3			박사		부동산법전공
LAW8188	부동산거래판례연구	3			박사		부동산법전공
LAW8178	부동산계약법연구	3			박사		부동산법전공
LAW8179	부동산권리분석연구	3			박사		부동산법전공
LAW8181	부동산민사특별법연구	3			박사		부동산법전공
LAW8177	부동산법특수연구	3			박사		부동산법전공
LAW8184	부동산분쟁과법	3			박사		부동산법전공
LAW6141	노동법일반이론	3			석사		사회법전공
LAW6142	사회보장법일반이론	3			석사		사회법전공
LAW6145	개별적노동관계법연구	3			석사		사회법전공
LAW6147	비교노동법일반연구	3			석사		사회법전공
LAW6149	노동법판례연구	3			석사		사회법전공
LAW6153	노동시장법일반연구	3			석사		사회법전공
LAW8134	비교노동법특수연구	3			박사		사회법전공
LAW8135	비교사회보장법특수연구	3			박사		사회법전공
LAW8136	비교개별적노동관계법연구	3			박사		사회법전공
LAW8138	사회보험법특수연구	3			박사		사회법전공
LAW8143	연금법세미나	3			박사		사회법전공
LAW8147	비정규직법특수연구	3			박사		사회법전공
LAW6071	상사법일반이론	3			석사		상사법전공
LAW6073	상사법기본판례연구	3			석사		상사법전공
LAW6074	상거래법기본연구	3			석사		상사법전공
LAW6075	회사법기본연구	3			석사		상사법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고
LAW6076	회사법판례연구	3			석사		상사법전공
LAW6078	유가증권법기본연구	3			석사		상사법전공
LAW6081	보험법연구	3			석사		상사법전공
LAW6082	경제법기본연구	3			석사		상사법전공
LAW6085	비교회사법연구	3			석사		상사법전공
LAW6087	해상법연구	3			석사		상사법전공
LAW6088	자본시장법연구	3			석사		상사법전공
LAW6089	금융법연구	3			석사		상사법전공
LAW6090	상법상외관이론연구	3			석사		상사법전공
LAW6211	국제금융법일반이론	3			석사		상사법전공
LAW8066	상사법특수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069	회사법특수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070	회사지배구조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071	M&A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074	유가증권법특수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082	주식회사법특수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083	자본시장법특수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084	보험법특수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085	금융법특수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086	미국통일상법전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087	사외이사제도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088	상사법통설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089	해상법특수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090	전자상거래법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091	정책과법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117	국제환경법특수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8367	기업집단법연구	3			박사		상사법전공
LAW6221	스포츠법일반이론	3			석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6224	스포츠산업법연구	3			석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6227	엔터테인먼트법연구	3			석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6230	공연예술법연구	3			석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8202	스포츠법특수연구	3			박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8203	스포츠중재법연구	3			박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8204	스포츠계약법연구	3			박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8205	스포츠보험법연구	3			박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8206	스포츠에이전트법연구	3			박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8208	게임산업법연구	3			박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8209	영화영상법연구	3			박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8212	음반산업법연구	3			박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8216	국제스포츠법연구	3			박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8372	공중위생법연구	3			박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8373	화장품법제세미나	3			박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6383	스포츠와손해배상	3			석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6384	엔터테인먼트와손해배상	3			석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8391	엔터테인먼트보험법연구	3			박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전공
LAW6176	인터넷법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178	인터넷과개인정보법제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181	정보공개법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186	인터넷법제판례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187	개인정보법제판례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190	유럽연합의개인정보법제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191	디지털포렌식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193	사이버상의불법유해정보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194	자율주행운송수단에대한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195	암호자산에대한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370	영미법계의개인정보법제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371	대륙법계의개인정보법제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고
LAW6372	신용정보법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373	위치정보법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8376	신용정보법세미나	3			박사		과학기술법전공
LAW8377	위치정보법세미나	3			박사		과학기술법전공
LAW8235	유럽연합의개인정보법제세미나	3			박사		과학기술법전공
LAW8240	디지털포렌식세미나	3			박사		과학기술법전공
LAW8242	사이버상의불법유해정보제세미나	3			박사		과학기술법전공
LAW8365	자율주행운송수단에대한세미나	3			박사		과학기술법전공
LAW8366	암호자산에대한세미나	3			박사		과학기술법전공
LAW8368	영미법계의개인정보법제세미나	3			박사		과학기술법전공
LAW8369	대륙법계의개인정보법제세미나	3			박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380	인터넷과디지털저작권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381	디지털의료사업및의료제품규제개선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382	보건의료법제와감염병예방법제연구	3			석사		과학기술법전공
LAW8388	도메인분쟁사례세미나	3			박사		과학기술법전공
LAW8236	인터넷과표현의자유세미나	3			박사		과학기술법전공
LAW8390	바이오헬스케어법제연구	3			박사		과학기술법전공
LAW6238	특허법연구	3			석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6239	디자인보호법연구	3			석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6240	상표법연구	3			석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6241	저작권법연구	3			석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6248	문화산업법연구	3			석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635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연구	3			석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6351	도메인이름분쟁사례연구	3			석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6352	지식재산권법일반이론	3			석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6368	지식재산권법세미나	3			석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6369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3			석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8218	특허법특수연구	3			박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8219	디자인보호법특수연구	3			박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8220	상표법특수연구	3			박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8221	저작권법특수연구	3			박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8232	기술사치평가와기술이전연구	3			박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8237	도메인이름분쟁사례특수연구	3			박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823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특수연구	3			박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8239	산업기술유통방지법연구	3			박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8363	지식재산권법특수연구	3			박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8364	신지식재산권법특수연구	3			박사		지식재산권법전공
LAW6056	형법일반이론	3			석사		형사법전공
LAW6057	범죄론	3			석사		형사법전공
LAW6058	형법론(보안처분론포함)	3			석사		형사법전공
LAW6060	형법특수연구	3			석사		형사법전공
LAW6062	비교형법연구	3			석사		형사법전공
LAW6063	형사소송법일반이론	3			석사		형사법전공
LAW6065	형사소송법특수연구	3			석사		형사법전공
LAW6067	형사정책론	3			석사		형사법전공
LAW6290	형법세미나	3			석사		형사법전공
LAW6366	형법체계론	3			석사		형사법전공
LAW6367	공범론	3			석사		형사법전공
LAW8051	범죄체계론	3			박사		형사법전공
LAW8054	양형론	3			박사		형사법전공
LAW8055	정보형법연구	3			박사		형사법전공
LAW8021	경제형법연구	3			박사		형사법전공
LAW8058	형사소송구조론	3			박사		형사법전공
LAW8059	수사절차법연구	3			박사		형사법전공
LAW8060	형사증거법연구	3			박사		형사법전공
LAW8061	상소제도론	3			박사		형사법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고
LAW8063	소년사법제도론	3			박사		형사법전공
LAW8064	특수범죄론	3			박사		형사법전공
LAW8065	형법사상사연구	3			박사		형사법전공
LAW8355	형법구조이론	3			박사		형사법전공
LAW8356	탐정법원론	3			박사		탐정법전공
LAW8358	비교탐정법론	3			박사		탐정법전공
LAW8359	탐정과기본권론	3			박사		탐정법전공
LAW8360	탐정과사법	3			박사		탐정법전공
LAW8361	탐정과형사법	3			박사		탐정법전공
LAW8362	탐정윤리와법	3			박사		탐정법전공
LAW8378	탐정과기업법	3			박사		탐정법전공
LAW8379	탐정과형사절차	3			박사		탐정법전공
LAW8380	탐정과지식재산권법	3			박사		탐정법전공
LAW8381	탐정과범죄	3			박사		탐정법전공
LAW8382	탐정과개인정보법	3			박사		탐정법전공
LAW8383	탐정과금융법	3			박사		탐정법전공